

식조검사제도 및 식조검사의 실태(2)

〈지난호에 이어...〉

2) 인정 소규모 식조처리업자의 특례

(인정 소규모 식조처리업자에 관계되는 식조검사의 특례)

제16조 一의 식조처리장에 있어서 식조처리를 하고자 하는 식조의 수수가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수 이하인 식조처리업자로 당해 식조에 관계되는 제5항의 확인에 관하여 그 확인방법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확인 규정을 작성하고, 이것을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규정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는 요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인정을 받은 식조처리업자(이하 「인정 소규모 식조처리업자」라고 한다)는 확인규정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인정 소규모 식조처리업자는 그 인정에 관한 식조처리장에 있어서의 식조처리에 대하여는 전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인정 소규모 식조처리업자는 그 인정에 관한 식조처리장에 있어서 식조처리를 하는 식조수수가 정령(定令)으로 정한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식조처리를 해야 한다.

⑤인정 소규모 식조처리업자는 그 인정에 관한 식조처리장에서 식조처리할 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식조처리 위생관리자에게 식조의 생체상황, 식조도체의 체표(體表)상황 또는 식조 내장적출(中拔) 도체에 관한 내장 및 그 체벽의 내측면 상황(차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에 규정하는 식조도체를 양수(讓受)했을 때에는 내장을 적출한 당해 식조도체에 관한 내장 및 그 체벽의 내측면 상황)에 대해 확인규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는가의 여부를 확인시켜야 한다.

⑥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확인에 관한 사항이 동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 당해 확인을 시행한 식조처리위생관리자에게 계속하여 동항(同項)의 확인을 시행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 소규모 식조처리업자에 대해 그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⑦인정 소규모 식조처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5항의 확인 상황을 도도부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인정 소규모식조처리업자가 확인규정을 폐기하는 요지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했을 때에는 당해 인정은 그 제출일에 속하는 해(年)의 다음해 4월 1일(그 제출일이 1월에서 3월까지에 속했을

때에는 그 해의 4월 1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도도부현지사가 정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⑨도도부현지사는 당해 소규모 식조처리업자에 대하여 제5항 확인의 적절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기속적 지도 및 조언(助言)을 하는 것으로 한다.

3) 지출(持出) 등의 금지(禁止)

(지출 등의 금지)

제17조 ①누구도 식조검사에 합격한 뒤 또는 전조 제5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요지의 동항(同項)의 확인이 된 후가 아니면 식조도체, 식조 내장적출(中拔) 도체 또는 식조육(肉) 등을 식조처리장 밖으로 지출해서는 안된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一. 식조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았을 때에는 도도부현(보건소를 설치한 시(市) 또는 특별구(丘)에 있어서는 시 또는 특별구, 이하 같음)의 직원 또는 제2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검사원이 식조도체, 식조 내장적출(中拔) 도체 또는 식조육 등의 일부를 지출(持出)했을 때

二. 도도부현의 직원이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조도체, 식조 내장적출(中拔) 도체 또는 식조육 등의 일부를 수거(收去)했을 때

三. 식조처리업자(인정 소규모 식조처리업자를 제외한다. 다음 호에 있어서도 같다)가 인정소규모 식조처리업자에게 탈모후 검사에 합격한 식조도체를 양도했을 때

四. 식조처리업자가 식육의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자(식품위생법(소화 22년 법률 제233호) 제21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로서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한다(이하 「계출식육판매업자」라고 한다)에게 탈모후 검사에 합격한 식조도체를 양도했을 때

五. 인정 소규모 식조처리업자가 식조처리위생관리자에게 식조의 생체상황 및 식조도체의 체표(體表) 상황에 관하여 전조 제5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요지의 동항의 확인을 시킨 후 다른 인정 소규모 식조처리업자에게 당해 식조도체를 양도했을 때

六. 식조처리업자가 제19조에 규정하는 소독, 폐기 혹은 식용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또는 도도부현의 직원이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폐기 기타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식조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식조도체, 식조 내장적출(中拔) 도체, 혹은 식조육 등 또는 전조 제5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요지의 동항의 확인이 된 식조도체, 식조 내장적출(中拔) 도체, 혹은 식조육 등을 지출했을 때

七. 기타 위생상 장점이 없을 때에 있어 정령(政令)으로 정했을 때

②계출식육판매업자는 탈모후 검사에 합격한 식조도체를 인정 소규모 식조처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4) 양수(讓受)의 금지

(양수의 금지)

제18조 ①누구도 식조처리장 이외의 장소에서 식조처리를 한 식조도체, 식조 내장적출(中拔) 도체 혹은 식조육 등 또는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조처리장 밖으로 지출(持出)된 식조도체, 식조 내장적출(中拔) 도체 혹은 식조육 등을 식품으로서 판매(불특정 또는 다수(多數)의 사람에 대한 판매이외의 수여(授與)를 포함한다. 다음 항(項)에서도 같다)의 용도를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정 소규모 식조처리업자이외의 사람이 계출식육판매업자로부터 탈모후 검사에 합격한 식조도체를 식품으로 판매하는 목적으로는 양수하여서도 안된다.

5) 폐기(廢棄) 등

(폐기등)

제19조 식조처리업자는 식조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식조, 식조도체, 식조 내장적출(中拔) 도체 혹은 식조육 등 또는 제16조 제5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요지의 동향의 확인이 된 식조, 식조도체, 식조 내장적출(中拔) 도체 혹은 식조육 등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소독, 폐기 또는 식용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0조 도도부현지사는 전조에 규정하는 식조가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혹은 동조에 규정하는 식조도체, 식조 내장적출(中拔) 도체, 혹은 식조육 등이 질병에 걸린 식조에 관계되기 때문에 식용에 제공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동조에 규정하는 식조, 식조도체, 식조 내장적출(中拔) 도체, 혹은 식조육 등에 의하여, 혹은 동조에 규정하는 식조의 도살, 우모의 제거 혹은 내장의 적출에 의하여 병원체가 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공중 위생상 필요한 한도(限度)에 있어 다음에 계기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단, 동조에 규정하는 소독, 폐기 또는 식용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에 의하여 다음에 계기하는 조치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一. 당해 식조의 도살, 우모의 제거 또는 내장의 적출을 금지할 것.

二. 당해 식조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 식조처리업자, 기타의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 식조의 격리, 식조처리내의 소독, 기타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하고, 또는 그 직원에게 이들의 조치를 강구시키는 것.

三. 그 직원에게 당해 식조, 식조도체, 식조 내장적출(中拔) 또는 식조육 등에 대하여 폐기, 기타의 조치를 강구시키는 것.

지정검사기관

1)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식조검사의 위임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식조검사의 위임)

제21조 ①도도부현지사는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고 한다)에게 식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지정은 식조검사를 시행코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도도부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게 식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시키코자 할 때에는 당해 식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2) 지정의 기준

(지정의 기준)

제22조 ①후생노동장관은 전조 제2항의 신청이 다음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조 제1항의 지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一. 직원, 설비, 식조검사 업무의 실시방법, 기타사항에 관한 식조검사업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 식조검사 업무의 적정 및 확실한 실시를 위하여 적절하여야 할 것.

二. 전항의 식조검사업무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적정 및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경리적 기호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三. 식조검사 업무이외의 업무를 시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식조검사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는 우려가 없을 것.

②후생노동장관은 전조 제2항의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했을 때에는 동조 제1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一. 민법(명치 29년 법률 제89호)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외의 자(者)일 것.

二.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 혹은 처분에 위반하여 형(形)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고 또한 그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일 것.

三.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일 것.

四. 그 역원(役員) 가운데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것.

ㄱ. 제2호에 해당하는 자

ㄴ.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해임되고 그 해임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C